

##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주거 시설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공개 통지

### 합리적인 주거 시설

뉴욕주 인권법은 주택 제공자가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이나 생활 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개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의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택 제공자에게 건물의 공용 구역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거나 귀하의 요구사항에 맞게 특정 정책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거 시설을 요청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거나:

\_\_\_\_\_ 또는 \_\_\_\_\_,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_\_\_\_\_<sup>\*</sup>  
Management Tel. # Additional Management Tel. # Management Email

재산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귀하는 주택 사용을 힘들게 하는 장애 또는 건강 문제가 있으며 귀하의 주거 시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택 제공자가 제공하는 편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주택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보험으로 보장되는 장애가 있고 주거 시설 요구가 장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주거 시설 요청을 거부당했거나 합리적인 주거 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주거가 거부되거나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된 대로 뉴욕주 인권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의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sup>†</sup>

주택 내부를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하고(단, 이러한 변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인 경우 주택 제공자가 퇴거할 때 해당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주택 제공자의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의 변경, 건물 사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건물의 공용 구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뉴욕주 인권법은 주택 제공자가 공동 사용 구역 변경에 대해

<sup>\*</sup> 위의 466.15(d)(1)에 따라 본 통지서 제공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d)(2)에 따라 제공되고 이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주거 시설을 요청하려면 재산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up>†</sup> 본 통지서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뉴욕주 인권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지 법률에서 본 통지서에 설명된 것 외에 추가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지 법률이 귀하의 보호를 줄일 수 없습니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거 시설 및 개조의 예입니다.

귀하가 이동 장애가 있는 경우, 주택 제공자에게 귀하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 또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애완 동물을 키우는 것이 귀하의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애완 동물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욕실 손잡이가 필요한 경우 자비로 설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할 주택이 1991년 3월 13일 이후에 건축되어 첫 입주를 했고 욕실 손잡이를 보강해야 하는 경우, 주택 제공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할 주택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주택 제공자에게 해당 주차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각 장애가 있고 큰 활자와 같은 대체 형식의 통지서가 필요하거나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접근성 표준**

1991년 3월 13일 이후에 사용하도록 건설된 모든 건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 및 공용 구역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모든 다가구 건물에는 접근 가능한 통로, 비품, 콘센트, 온도 조절 장치, 욕실 및 주방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건물이 필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뉴욕주 인권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제기 방법**

차별 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국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차별 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www.dhr.ny.gov](http://www.dhr.ny.gov) 를 방문하거나

1-888-392-3644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권리와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만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구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국 지사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사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